

서울특별시립 노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855
----------	-----

2012년 6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2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 가. 시립 노원청소년수련관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로서,
- 나. 법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운영의 효율성과 양질의 대 청소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년 (2013.1.1 ~ 2014.12.31)
- 위탁업무
 -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 청소년의 문화·체육·인성 등 수련활동 사업
 - 청소년의 지식·정보화 능력배양 사업
 - 어려운 청소년 등 자립·지원 사업
 - 청소년상담활동 사업
 -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 지역·시설·인적구성원 등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련관 대표사업
 -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소요예산
 - 2010년 : 4,336,609천원
 - 2011년 : 4,751,719천원
 - 2012년 : 4,698,133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동의안 제출 배경

- 시립 노원청소년수련관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구분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소재지	은평구 응암동 산6-46	노원구 상계6동 772	강남구 수서동 749
부지면적	13,500m ²	3,330m ²	41,328m ²
건축면적	4,927m ²	8,246m ²	6,381m ²
건물층수	지하1층, 지상3층	지하2층, 지상6층	지하2층, 지상3층
주요시설	수영장, 어린이체육관, 미술실, 피아노실, 헬스장, 방과후아카데미 등	헬스장, 체육관, 수영장, 예능활동실, 미술실, 공연장, 태권도실 등	수영장, 헬스장, 청소년극장, 소체육관, 공연장, 음악실, 과학실 등
운영법인	(사회)은평천사원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한국청소년세상
위탁기간	2009.11.11~2012.12.31	2009.11.13~2012.12.31	2009.12.1~2012.12.31
개관일자	2003.11.1	1998.1.22	1994.7.21

(2) 민간위탁 필요성 및 지속성에 대한 검토

- 민간위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것임.
- 위탁업무는 노원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청소년의 문화·체육·인성 등 수련활동 사업, 청소년의 지식·정보화 능력배양 사업, 어려운 청소년 등 자립·지원 사업, 청소년상담활동 사업,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지역·시설·인적구성원 등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련관 대표사업,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임.
- 최근 청소년의 여가시간과 여가활용 욕구가 증대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여가 시간에 주로 정적이고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활동적인 행위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평일 방과 후 시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하여 문화 및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지원공간이 필요하고, 아울러 청소년수련관은 신체단련 뿐만 아니라 상담, 토론 등을 하는 종합 청소년 문화센터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 이런 의미에서 도심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음악·미술·체육 등 지도에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 민간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함.
- 다만, 향후 청소년수련관의 무형의 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 그 질과 성과를 평가하기에 용이하도록 민간위탁계약 체결에 반영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서비스의 유형, 인력, 단위비용, 기간, 빈도 등 투입에 대한 측정도구와 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표준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3)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에 있어서의 유의점

- 시립 노원청소년수련관은 재계약의 대상으로, 향후 청소년수련관의 공공서비스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서울시로부터 대행하는 민간 위탁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위탁의 취소가 되는 사유도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 노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855
------------	-----

제출년월일 : 2012년 6월 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로서,
- 나. 법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운영의 효율성과 양질의 대 청소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72
- 시설규모 : 대지 3,330m², 건물 8,246m²(지하2층~지상6층)
- 준공일자 : 1998.1.22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기타(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시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년 (2013.1.1 ~ 2014.12.31)
- 위탁업무
 -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 청소년의 문화·체육·인성 등 수련활동 사업

- 청소년의 지식 · 정보화 능력배양 사업
- 어려운 청소년 등 자립 · 지원 사업
- 청소년상담활동 사업
-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 지역 · 시설 · 인적구성원 등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련관 대표사업
-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소요예산

- 2010년 : 4,336,609천원
- 2011년 : 4,751,719천원
- 2012년 : 4,698,133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1998.1.22 ~ 2001.1.31(3년,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 2차 : 2001.2.1 ~ 2004.1.31(3년,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 3차 : 2004.2.1 ~ 2007.1.31(3년,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 4차 : 2007.2.1 ~ 2009.11.12(2년,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 5차 : 2009.11.13 ~ 2012.12.31(3년,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의 운영능력을 활용 양질의 대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탄력적 예산운영 · 집행 및 유연한 인력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가능
- 대부분의 추진업무가, 음악 · 미술 · 체육 등 지도에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그램 또는 청소 · 차량운행 · 시설유지 등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업무로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요건에 해당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③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①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항
 - 시장의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 위탁할 수 있다.

나. 기타사항

-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심사계획(2012.6 방침수립 중)